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41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안태준 · 문진석 · 김영진
소병훈 · 이정문 · 염태영
백혜련 · 한병도 · 정준호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

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4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약·동의·해제·심의회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19. ~ 37. (생략)	19. ~ 3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8. (생략)

<신설>

9.·10. (생략)

②·③ (생략)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

의 설치 등) ①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9.·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 설>

⑤ ~ ⑨ (생략)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② (생략)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 8. (생략)

<신 설>

1. ~ 11. (현행과 같음)

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 8. (현행과 같음)

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